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충청북도 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09
----------	-----

2020. 4. 29.(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오영탁 의원 등 6인
- 나. 발의일자 : 2020년 4월 13일
- 다. 회부일자 : 2020년 4월 16일
- 라. 상정일자 : 2020년 4월 22일
 -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오영탁 의원)

가. 제안이유

- 석면의 피해로부터 충청북도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석면의 안전관리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자연발생석면 분포현황 파악·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관리지역 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위한 지원 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에 따른 시·군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 서완석)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석면의 피해로부터 충청북도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 같은 법 제15조는 도지사가 석면안전 관리계획 수립과 시행하도록

하였고, 제20조는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3조는 석면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수립 및 시행을 도지사로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 및 제6조는 자연발생석면 파악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

- 안 제7조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 및 제9조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위한 지원 대상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0. 4. 6.~'20. 4. 12.)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석면의 피해로부터 충청북도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상위법인 「석면안전관리법」 과 이 조례의 시행을 통해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 44,948동('20. 1월말 기준)에 비해 사업량이 부족하여 2024년도까지 철거 계획 중인 건축물 수가 전체의 30%밖에 되지 않으므로,
-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이에 매칭한 지방비도 증액 투자하여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시점을 앞당겨 1군 발암 물질인 석면으로부터 도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등

충청북도 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충청북도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2.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3. “석면비산방지”란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섞어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충청북도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석면의 안전관리, 석면슬레이트의 해체·제거·

수집·운반·보관·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자연발생석면 분포현황 파악·관리) 도지사는 「석면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충청북도 내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지정 해제되거나 그 지역이 축소된 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구분하여 파악·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지역 외의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의 관리)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개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3. 개발사업 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2.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대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을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 사업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4. 「주택법」에 따른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을 하는 경우

5.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의 시행

에 따른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내용 및 기관별 재원 분담계획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사업비의 지원에 관하여 제2항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珪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등이 크게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지역의 지정·고시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관리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현황
2. 석면 제거, 복토(覆土) 등 석면의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주민 건강관리 및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발생석면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석면 비산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하 "석면비산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은 개발사업자가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 및 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승인기관은 개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개발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④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지정 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 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 관리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 등이 현저히 줄어들

었다고 판단되는 관리지역에 대하여 관리지역의 지정 해제 또는 그 지역의 축소를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① 시·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석면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지역개발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모래·자갈·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노천굴에 의한 광물의 채굴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4.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토석채취 면적 또는 채석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제36조(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법 제25조제1항에서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작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시·군·구 단위 또는 읍·면·동·리 단위 등으로 묶어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이하 "석면비산방지계획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석면비산방지계획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허가·면허 등의 신청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농어촌 정비법]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생활환경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6. 농어촌 주택의 개량에 관한 사항(제2조제10호차목에 따른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을 포함한다)

충청북도 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철거·처리 및 개량 비용을 지원함
-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하는 석면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개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시·군에 교부하여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

2. 비용 발생 요인

- 2011년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석면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개량에 대한 시군 보조사업을 매년 지원 중이며 조례 제정으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 없음

3. 관련조문

-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지원(안 제7조)
-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대상 및 사업비의 시·군 지원(안 제8조~제9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 44,948동('20. 1월말 현재)
- 철거 계획(2020~2024년) : 13,785동(전체30%) (연간 2,757동 × 5개년)
 - 2020년 계획 : 2,757동(주택 2,488동(개량 269동 포함), 비주택 456동)
 - 2011~2019년 철거현황 : 15,810동 철거 / 사업비 368억원
- 지원액(동당) : 철거비(주택 344만원, 비주택 172만원), 지붕개량 427만원
 - ※ 환경부 국고지원 기준
- 부담비율 : 일반회계(국고 50%, 도 15%, 시·군 35%)

